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62

발의연월일: 2021. 11. 11.

발 의 자:윤준병·정일영·이용빈

이수진(비) · 강득구 · 김수흥

전재수 · 송옥주 · 위성곤

박성준(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소유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양묘,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단계별로 산림사업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목재수확을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사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목재수확 및 벌채의 허가와 신고 수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예정지를 답사하고, 계획의 타당성·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원칙의 부합성·경관 및 재해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그러나, 벌채 허가 및 신고 신청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일시에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담당자의 주기적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림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벌채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목재수확 및 벌채 계획에 대한 생태·경관·재해 위험 등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벌채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법률 제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 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 이전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입목벌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벌채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벌채 타당성 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등과 전문 기관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
고 등) ① (생 략)	고 등)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
	가 이전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입목
	벌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기 위한 벌채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벌채 타당성
	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등과
	전문기관의 감독 등에 관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②</u> ~ <u>⑩</u> (생 략)	<u>④</u> ~ <u>⑩</u> (현행 제2항부터 제1
	0항까지와 같음)